2026년도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 FAQ

Ⅰ. 2책 3공 관련

1. (2책 3공) 2책 3공이란 무엇인가요?

➔ 2021.1.1.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자 1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 지원의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로 합니다(3책 5공).

➔ 다만, 3책 5공 이내에서 **교육부 소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최대 3개까지 수행이 가능**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 이내**로 합니다**(2책 3공)**.

➔ 상기의 "2책 3공" 원칙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3개의 군으로 구분·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책임자의 경우 각 사업군별로 1개 사업만 신청·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및 공동연구군	집단연구군	성과확산군
· 석사·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 글로벌리서치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B유형) · 신진연구 · 중견연구 · 공동연구(국내·해외)	· 인문사회연구소(순수학문연구형, 문제해결형, 교육연계형, 예술체육특화형) · 인문한국지원(HK+, HK 3.0) · 사회과학연구(우수연구집단육성, 글로벌아젠다) ·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연구그룹·연구소지원·컨소시엄형)	· 명저번역 · 저술지원

※ 세부내용은 본 사업 신청요강 중 "Ⅲ-신청" 중 "2. 신청 및 수행제한" 참고

2. (개인 및 공동연구군 동시 신청) 2026년도의 경우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B 유형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 동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 B 유형의 신청자는 신진연구자지원사업 또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중 1개 사업을 선택하여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중에서 1개 사업만 최종 선정되며, 선정 우선순위는 ① A유형 → ② 신진 또는 중견 → ③ B유형 순입니다.

※ 우선순위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후순위 사업의 신청 내역은 자동 취소됨

Ⅱ. 회계연도 일치 관련

1. (회계연도 일치)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연구기간을 조정한다고 되어있던데, 회계연도 일치란 어떤 의미인가요? 연구활동계획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 회계연도 일치란 정부의 예산 절감을 위해 대학 회계연도(매년 3.1.~2.28.)와 각 사업연도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침입니다.

➔ 연구활동계획서는 **전체 연구기간의 연구활동 계획을 염두에 두고** 각 연차별 사업 내용을 작성합니다.

➔ 다만, **연구비 지급 시기별 지급 금액은 아래 예시와 같이 조정됩니다.**

연구기간	신청 중 (연구계획서 작성 및 e-R&D 입력)	선정 후 (과제관리 및 연구비 지급 기준)
3년(36개월)	1년차(12개월) 2026.6.1.~2027.5.31	1차년도(9개월[75%]) 2026.6.1.~2027.2.28
	2년차(12개월) 2027.6.1.~2028.5.31	2차년도(12개월) 2027.3.1.~2028.2.29
		3차년도(12개월) 2028.3.1.~2029.2.28
	3년차(12개월) 2028.6.1.~2029.5.31	4차년도(3개월[25%]) 2029.3.1.~2029.5.31

➔ 단년 과제는 회계연도 일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 신규과제 신청 시에는 각 연차별 12개월의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선정 이후, 1년차 선정금액은 1차년도 9개월(75%), 마지막 차년도 3개월(25%)로 자동 분할됩니다.

2. (회계연도 일치) 회계연도 일치 방침에 따라 연구비 입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계연도 일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연 지원 금액은 동일합니다. **12개월을 기준으로 연차별 금액을 입력**하면 선정 이후 1년차 금액의 75%는 1차년도에, 남은 25%는 마지막 차년도에 지급하게 됩니다.

➔ 사업비 신청 예시

예시	신청 중(연구자 입력)		선정 후(참고)	
	연도	신청 금액(원)	기간	지급 금액(원)
① (3년 과제)	1년차	**20,000,000**	2026.6.1.~2027.2.28	**15,000,000[75%]**
	2년차	**20,000,000**	2027.3.1.~2028.2.29	20,000,000
			2028.3.1.~2029.2.28	20,000,000
	3년차	**20,000,000**	2029.3.1.~2029.5.31	**5,000,000[25%]**
② (2년 과제)	1년차	**10,000,000**	2026.6.1.~2027.2.28	**7,500,000[75%]**
	2년차	**10,000,000**	2027.3.1.~2028.2.29	10,000,000
			2028.3.1.~2028.5.31	**2,500,000[25%]**

Ⅲ. 신청 시 주의 사항

1. (공통 신청자격)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온라인 신청마감일 기준, "최초 조교수 이상 임용 후 5년 이내('21.2.9. 이후 임용)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16.2.9. 이후 취득)"로 나와 있습니다.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면**(이 중 1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연구책임자는 사업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이어야 합니다.

2. (신청자격-연구자) (공통) 신청자격 중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와 같이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연구자에 해당이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
5.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社內大學)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다. 제2호가목 및 다목의 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라.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에 따라 학술활동 또는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 마.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바. 대학·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한 사람

3-1. (신청자격-연구기관)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일 경우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 다목에 해당하는 연구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 「학술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술진흥법」 제2조 제3호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3-2. (신청자격-주관기관 학회 가능 여부) 학회를 주관기관으로 해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니오, 학회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비 중앙관리 및 원활한 연구과제 관리를 위해 주관연구기관은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격-학문후속양성) '학문후속양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성장단계별 연구가 가능하도록, 신규 선정과제 중 일부를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학문후속양성' 유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신진연구 '학문후속양성' 유형 자격요건>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B유형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 중, **사업 공통 자격요건** 및 **아래 세부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연구자

ㅇ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기수행자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을 60개월 이상 수행 후 최근 3년 이내(2023.1.1. ~ 2025.12.31.) 연구를 종료한 연구책임자

ㅇ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 기수행자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을 12개월 이상 수행 후 최근 3년 이내(2023.1.1. ~ 2025.12.31.) 연구 종료 및 결과보고를 완료*한 연구책임자

*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기한이 2025.12.31.까지이며,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필수

□ 하위단계 사업(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B유형) 수행 당시의 연구주제와 유사·동일한 주제로만 지원 가능

➔ 기타 사업(예: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수행자는 지원 가능 대상자가 아닙니다.

➔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지만 학문후속양성 유형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다른 유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자격-소외보호) '소외보호' 유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소외보호 연구 장려를 위해, 신규 선정과제 중 일부를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소외보호 유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① **신진연구자지원사업 공통 신청자격 충족**

② **소외보호의 정의**에 해당하는 주제 및 내용으로 지원(신청요강 6쪽 참고)

➔ 소외보호 선정은 연구책임자 본인이 연구활동계획서 상에 작성한 **소외보호 적합성** 내용으로 평가받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신청자격-비전임 연구자) 비전임 연구자(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의 경우 동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예, 비전임 연구자도 신청요강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비전임 연구자의 경우 사전에 신청기관을 정하고,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와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 전·후 원활한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7. (신청자격-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2026년 2월 말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까?

➔ 네, 연구개시일(2026.6.1.)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학위 취득 예정 증명서 등 대학 공식 증빙 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연구개시일(2026.6.1.) 전에 박사학위 취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선정 이후라도 미충족이나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제 탈락 처리함(선정 취소)

8. (임용기준) 2021.2.1. 최초 조교수로 임용된 경우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불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21. 2. 9. 이후에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국내대학 소속 교원**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1. 2. 1.** 임용된 교원의 경우 조교수로 임용된 지 5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단, 임용기준 외 '박사학위 취득' 기준도 있으므로, **2016. 2. 9. ~ 2026. 5. 31. 내 박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연구자는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9. (임용대학 기준-전문대학) 전문대학에 임용되어 재직하다가 금년도에 4년제 대학으로 신규 임용되었을 경우,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신청자격이 **최초 대학교원의 임용시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문대학 임용일자부터 신청마감일까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0. (임용대학 기준-해외대학) 해외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국내대학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외대학의 근무경력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되는지요?

➔ 아니오, **해외대학의 교수경력은 신청요건의 교원 임용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외대학에 재직하다가 국내대학에 임용된 경우에는 **국내대학 임용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1. (퇴직·휴직기간 관련) 퇴직이나 휴직기간도 재직기간 5년에 포함이 되나요?

➔ **(퇴직기간)** 아니오,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5년 이내'의 규정에서 퇴직기간(조교수 직위를 상실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만약, 2013. 3월부터 2016. 2월까지 3년간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대학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였고, 다시 2025. 4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면, 2013. 3월~2016. 2월까지의 3년 경력과, 현재 1년 미만 경력 합산 시 5년 미만이므로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접수시작 전에 공문으로 퇴직기간에 대한 증빙**을 해야만 하며, 미증빙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접수 전 2026. 1. 30.(금)까지 공문 송부)**

→ **최초 임용일이 2021. 2. 8. 이전인 분들만 퇴직기간에 대한 증빙 필요합니다.**

○ 2021.2.9. 이후에 임용된 분들은 신청시스템에 바로 접수가 가능하니 별도의 증빙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휴직기간)** 네,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12. (중복신청 가능여부-1) 타 사업에 연구책임자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교육부 소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2과제 수행 가능합니다. (예: 연구책임자 2과제 + 공동연구원 1과제)

➔ 따라서 타 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더라도, 동 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내에서 연구책임자로는 사업군별 1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 가능합니다. **(Ⅱ. 2책 3공 관련 참고)**

(CASE1) 현재 연구책임자로 저술출판지원사업(성과확산군)에 참여하고 있다면, 신진연구자지원사업(개인 및 공동연구군)에 신청 가능합니다.

(CASE2) 현재 연구책임자로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신진연구자지원사업과 동일 사업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 신청 불가합니다.
(단,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수행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규과제 신청 가능합니다.)

13. (중복신청 가능여부-2) 타 사업에 공동연구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교육부 소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2과제 수행 가능합니다.
(예) 연구책임자 2과제 + 공동연구원 1과제

➔ 따라서 타 사업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더라도,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Ⅱ. 2책 3공 관련 참고)**

14. (중복신청 가능여부-3) 신진연구자지원사업과 중견연구자지원사업 트랙2(신진양성)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나요?

➔ **아니오, 두 사업은 동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사업별 특성 및 지원규모(지원기간), 신청자격 등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5. (신청-트랙별 중복신청) 신진연구자지원사업 3개의 유형 중 2개 이상 유형에 동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니오,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3개의 유형 중 1개의 유형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또한 유형별 연구활동계획서 양식이 다르므로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의 연구활동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가 완료된 이후 유형 변경은 불가합니다.

16. (기 수혜자 관련) 기 수혜자도 신청 가능합니까?

➔ 예, 이전에 본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원받았던 연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 후 5년이 넘지 않은 연구자이거나,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여야 합니다.

➔ 또한, 작년(2025년)에 본 사업 1년 과제에 선정되어, 연구기간 종료일이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연구수행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17. (공동연구 가능여부) 공동연구원과 함께 연구가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은 단독(개인)연구입니다. 따라서 학생연구자 외 공동/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는 불가합니다.

➔ 학생연구자 참여는 선택사항으로, 과제 특성상 학생연구자가 불필요한 경우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 (전임강사 경력) 전임강사 경력도 조교수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 예, 고등교육법 개정('11. 7. 21.)으로 전임강사의 명칭이 폐지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수로 인정하며, 해당 경력도 함께 인정합니다.

IV. 과제 계획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연구업적-게재예정논문)** 신청 마감일 이후에 발간되는 학술지(등재지)에 연구논문 게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연구업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논문게재예정증명서로는 연구업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마감일까지 게재가 완료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저·역서의 경우, **신청 마감일까지 출판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연구업적-직위)** 연구업적이 3편 이상 필요한데, 논문의 경우 반드시 교수의 직위일 때 등재된 논문이어야 합니까?

➔ 아닙니다. 직위와 상관없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게재가 완료된 논문이면 인정됩니다.

3. **(연구비 작성)** 연구비 계획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연구활동계획서에는 연구비 작성하는 곳이 없는데, 어디에 작성하면 되나요?

➔ 신청요강 [붙임1]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을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비 신청 내역을 연구활동계획서에 별도로 첨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신청연구비 예시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간접비는 연구비 신청 시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신청연구비 온라인 작성 화면(예시)>

4. **(연구비-인건비)** 본 사업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나요?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시,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 중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의 전부를 지급받거나, 취업자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연구자는 월 40만원 이내로 연구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 다만, 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구수당과 중복 계상은 불가합니다. (예: 최초 3개월간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으나 3개월 이후에는 퇴직하게 되는 경우, 본 사업비에서 최초 3개월은 연구수당을 계상하고 잔여기간 동안은 근로계약 체결 후 인건비를 계상하시면 됩니다.)

5. (연구비-시간강사 인건비)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서 인건비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및 제17조(겸임교원 등)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의 경우 대학 정규 강의에 따른 소득과 별개로 본 사업의 인건비 수혜가 가능합니다.

➔ 위의 법에 따른 인건비 이외 타 인건비를 받는 경우, 인건비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 평생교육법 및 중등교육법(고등학교 시간강사 등)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의 경우는 위의 법을 따르지 않으므로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신청이 불가합니다.

6. (연구비-간접비) 동 사업의 신청요강에 의하면 선정과제당 간접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비 신청 시 간접비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 아니오, 간접비는 신청 연구비에 포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접비는 과제가 선정되면 소속기관의 협약시점 고시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 소속기관으로 지급됩니다.

7. (학생연구자) 학생연구자는 무엇인가요?

➔ 기존에 동 사업에서 "연구보조원"으로 구분되던 인력으로, 학사과정생,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 중 연구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참여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를 말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 연구과제별 특성에 따라 학생연구자가 필수는 아니며, 신청자의 판단에 따라 학생연구자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학생연구자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과제 선정 이후 주관연구기관별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학생연구자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연구계획서에 학생연구자의 이름, 소속 등 상세정보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학생연구자별 학위 기준에 따른 인건비 상한선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비 계상 시에는 "학생인건비" 비목에서 계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과정생	수료생	취득생(졸업생)
학사학위	월 100만원 이내		**※ 참여 불가**
석사학위	월 180만원 이내		
박사학위	월 250만원 이내		

※ 학생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 중 다른 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의 전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학생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8. (연구활동계획서-유사주제) 올해 2책 3공에 따라 여러 과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계획서를 써도 되나요?

➔ 아니오, '26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 신청 연구활동계획서(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추진절차 등)가 유사·중복으로 판정될 경우 관련 과제 탈락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 신규 신청과제 간 또는 기 수행 과제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유사·중복 확인 시,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제재처분 병과 가능

➔ 다만, 일반적으로 한 명의 연구자가 연구하는 분야가 일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 분야가 동일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내 세부사업들은 각 사업별 취지와 사업의 목표, 지원 금액 및 기간 등이 모두 다르므로, 각 사업별 목적과 지원 규모에 맞게 연구활동계획서를 각각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연구활동계획서-작성기간) 연구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 신청자가 연구과제의 내용과 연구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연구기간(1~3년)을 설계하시면 됩니다.

10. (연구활동계획서-작성 언어) 연구활동계획서는 꼭 한국어로 작성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로 작성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연구자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영문**으로 작성하시는 것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어 및 영어를 제외한 기타 언어의 경우 평가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인정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단, 연구요약문의 경우 선정 후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가산점 부여 가능여부) 교육부 및 재단 우수성과 과제의 연구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가산점 부여 대상인 '교육부 및 재단 우수성과 과제'란,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발되어 시상한 과제를 말합니다.

※ '23~'25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과제의 대표자 1인에게는 가산점(3점) 부여 (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1회)

➔ 가산점 활용을 원할 경우, 신청마감일 이후 15일 이내 신청기관(주관기관) 공문을 통해 재단으로 가산점 사용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당 증빙 서류(상장)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네거티브 평가자 상피제도) 과제 신청 시 기재할 수 있는 네거티브 평가자 상피제도란 무엇인가요?

➔ 신청자가 개인적·학문적 관계 등을 이유로 평가자로 원치 않는 연구자가 있을 경우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 최대 2명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연구자는 평가에서 배제됩니다.

➔ 단, 네거티브 평가자 상피 입력은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Ⅴ. 기타 사항

1. (간접비) 간접비는 연구자가 사용 가능한 금액인가요?

➔ 아닙니다. 간접비는 전액 주관연구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주관연구기관의 과제 관리 능력 제고 등을 위해 해당 기관에 지급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서 과제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탭에서 '동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미동의 시 과제 신청 불가)

3. (IRB심의 관련) IRB 심의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대상 연구 등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이며, IRB 심의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

➔ 과제 선정 후 각 소속기관(대학 등)의 IRB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소속기관별 절차에 따라 IRB 심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합니다.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가 IRB 심의대상인지 여부 등을 포함한 **IRB 관련 사항은 소속기관의 IRB 심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각 대학 IRB심의위원회(단, 대학 내 IRB 심의위원회가 없는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문의, www.nibp.kr)

4. (지원분야) '인문사회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지원하나요?

➔ 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에 의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중 생활과학 일부, 예술체육, 복합학 분야를 지원합니다.

➔ 연구책임자의 전공에 관계없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의 주제가 인문사회분야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연구분야분류표 확인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업안내 → 사업자료실 → 연구분야분류표 → 학술표준분류 [클릭]

5. (연구자 윤리)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과제 참여연구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에 과제가 중단됩니까?

➔ 예, 본 사업의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가 성비위, 갑질로 인하여 소속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중단 처리되며 학술연구지원사업 제재처분이 부과됩니다.

6. (연구윤리 교육) 연구책임자의 경우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 예, 연구책임자는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연구윤리 교육'을 수료한 연구자는 이수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 종료 이후에도 연구를 수행 중인 경우, 재이수 필요)

➔ KIRD 이러닝 및 모바일 홈페이지(http://cyber.kird.re.kr) 및 각 대학교, 기관 이러닝 교육사이트(협약 대학 및 기관에 한정)에 접속하셔서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인문사회계)"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7. [중요!](주관연구기관 확인사항) 소속 기관에서 연구자의 신청자격 부합 여부를 어떤 절차로 확인해야 하나요?

➔ 아래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연구자가 공통 지원자격 및 신청하고자 하는 세부 유형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 제출한 **연구활동계획서 파일에 오류(PDF 모아찍기, 작성되지 않은 파일, 학교 보안 프로그램 잠금 등)가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